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<br>결<br>사<br>항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            |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제정령(안)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김현수<br>(농림축산식품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7420호, 2020.6.9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(2021.6.10.)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

### 나.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)

- 도로(고속도로 제외), 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,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

### 다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
-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,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

### 라.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

마.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
- 조성·관리계획 수립·변경 시 내용과 방법·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·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

바.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·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
-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·절차를 규정하고, 통계를 2년마다 작성·관리하도록 규정

사.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·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)

- 가로수의 조성·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

아.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자.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)

-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

차. 권한의 위임·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-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

카.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-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기준을 규정

타. 시행령의 시행일(부칙 제1조)

- 2021년 6월 10일

파. 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(부칙 제2조)

-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

하.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 제3조)

-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

거. 다른 법령의 개정(부칙 제4조)
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##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도로의 범위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

1.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도로는 제외한다)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, 보행자우선도로, 자전거전용도로
3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면도, 이도

제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사항)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도시숲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2.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

제4조(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)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또

는 제3항에 따라 도시숲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5조(구성·관리계획의 수립내용 및 방법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구성·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할 지역 안의 도시숲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·분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, 공익적 기능 발휘, 국민의 이용 및 참여 기회 증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
3.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
4. 도시숲등의 보전·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
6.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
7.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8. 가로수의 지역별·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

9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제2호의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기후보호형 : 폭염·도시열섬 등 도시의 대기환경을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·공기로 순환·유도·확산시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2. 경관보호형 :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,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등 경관보호 및 자연감상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3. 재해방지형 : 홍수조절, 산사태 방지 등 재해방지 기능과 폭풍·소음 등의 완화 및 재해 대피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4. 역사·문화형 : 문화재, 전통마을숲, 보호수, 사찰·사당 등의 종교적 장소 등 역사 보존과 문화 진흥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5. 휴양·복지형 : 체험·놀이·학습·및 산림욕·숲치유 등 휴양·교육·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6. 미세먼지 저감형 :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 또는 저감(흡수, 흡착, 침강)시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7. 생태계 보전형 : 도시 생태계 및 소생물권 보전·복원 및 생태계 연

결성 유지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

⑤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별 관리목표,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·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현황
2.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별 현황
3. 도시숲등의 기술개발·연구 현황
4. 도시숲등의 정보체계 구축·운영 현황
5.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 : 기본계획 또는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실시하는 조사
2. 수시조사 : 기본계획 또는 조성·관리계획 변경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, 방법,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

하여야 한다.

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⑥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·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
제7조(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·유지) 법 제1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8조(도시숲등의 기부채납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,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기부할 재산의 표시

2. 기부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
3. 기부할 재산의 가격

4.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.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도면 등 필요한 서류

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는 나무와 토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가 곤란한 경우

2. 기부 받은 나무와 토지 등에 대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

3.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

4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 등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·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 등에 관한 관리·처분에 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보조금의 반환)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은 5년을 말한다.

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

액에 보조금의 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내어야 한다.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을 일할계산으로 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지방산림청장,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
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 등의 관리·처분
3.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
4.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
5.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
6.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

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자료 수집·분석 및 통계관리
2. 법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도시숲등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보관·관리
3.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·평가

제11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“공원형”, “경관형”은 “경관보호형” 또는 “역사·문화형”, “휴양·복지형”, “생태계 보전형”으로, “방풍·방음형”은 “기후보호형”, “재해방지형”, “미세먼지 저감형”으로 보고, “생산형”은 삭제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0호의2호 중 “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단서규정을 삭제한다.

제2조제3항부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장제4절(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)을 삭제한다.

제2조제4호의 “도시림등의”를 “도시숲등의”로 한다.

제68조제8호의 "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·관리"를 "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"로 한다.

별표 1 "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"에서 "도시림"을 "도시숲"으로 한다.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11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| 법 제28조 제1항제1호 | 150만원  | 300만원 | 500만원    |
| 나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| 법 제28조 제1항제2호 | 50만원   | 70만원  | 150만원   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| (042) 481 - 4224 |